

2025 인천관광 디딤돌 프로젝트 공모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관광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2025 인천관광 디딤돌 프로젝트」 공모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02. 25.

인천관광공사 사장

공모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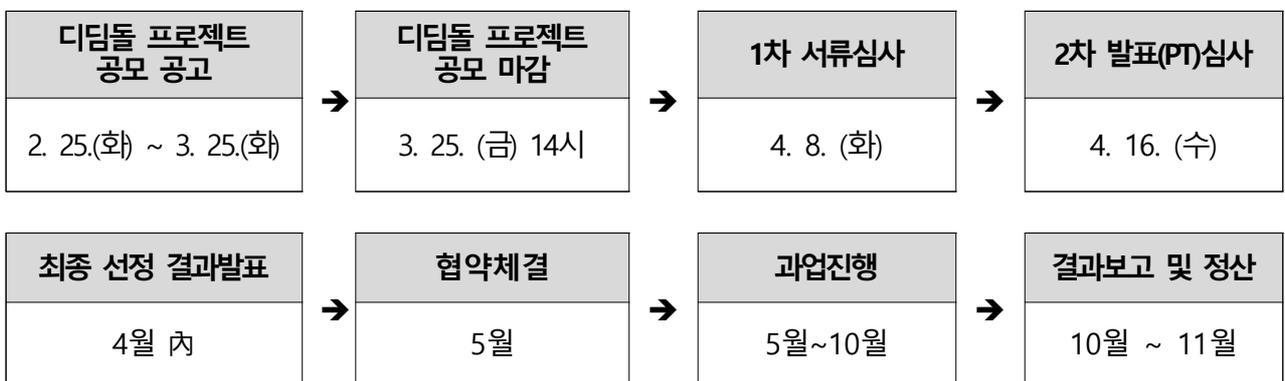
- 공모명 : 2025 인천관광 디딤돌 프로젝트 공모
- 공모기간 : 02. 25.(화) ~ 03. 25.(화) 14시까지 (총 31일간)
- 지원규모 : 총 14개 내외 기업 선정

연번	구분	선정 수	총 사업비	
			지원금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자부담 (필수)
①	입문형 신규	4	기업 당, 2,5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부가세 포함
②	기본형	8	기업 당, 5,000천원	
③	심화형	2	10,000천원~ 최대 20,000천원	

- 지원대상 :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 기업 규모의 인천 소재 관광사업체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인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등록일 '개업 연월일', (법인)법인 등기부 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추진일정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조건 : 관광진흥법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의해 핵심관광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인천 소재 관광 사업체

■ 유형별 지원자격 ※ 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구 분	공통 필수자격
① 입문형	■ 인천 소재 관광사업체(중·소기업 규모)
② 기본형	■ 과년도('22~'24년도) 동 사업 수혜기업으로 선발이력 없는 기업
③ 심화형	■ 인천 소재 관광사업체(중·소기업 규모) ■ 과년도('22~'24년도) 동 사업 수혜기업으로 선발이력 없는 기업 또는 1회의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

* 입문형에 한하여 지원기업의 기업 규모가 소상공인일 경우, 우선 선발함

■ 가산점 ※ 공모 접수기업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점수에 반영

가산점 유형	가점	가점 기준(1차 서류심사 점수 반영)
성장지원	+2	· 기업 규모가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에 해당되는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 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관광사업체 정의 및 기준 법령 ※ 자세한 내용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산업특수분류' 참고

▣ 관광사업체

- ①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하여 관광산업의 종류로 분류된 7개 업종에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사업체(체험시설업 포함)
- ②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의해 '핵심관광산업'으로 정의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구분	업종
②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준 핵심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쇼핑업 : 면세점,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인증쇼핑업 - 관광운수업 : 관광철도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 전세버스운송업, 자동차임대업, 관광 수상 운송업, 관광항공운송업 - 관광숙박업 : 산림휴양림업,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호텔, 관광 인증 모텔업, 민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 산업 : 박물관운영업, 사적지관리운영업, 식물원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운영업, 기타관광지운영업, 농어촌체험 및 생태관광업,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낚시장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운영

■ 중소기업 정의 및 기준 법령 ※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범위 기준' 참고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영리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됩니다.
- 주요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으로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되므로 평균매출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규모 기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한기준 : 업종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 다음 3가지(①~③)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 **디딤돌 프로젝트 지원사항 (디지털 전환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별첨 1\(공고문 10p\)](#) 참조

○ 디지털 전환 분야 3개 中 1개 선택 **必**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지원유형	지원항목	지원내용
입문형	온라인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스토어(오픈마켓)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 판매·유통 관련 채널 구축 및 온라인 홍보용 마케팅 지원 그 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디지털 전환 항목(운영기관 사전 협의 必)
		<p>[활용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진출 및 홍보를 위한 디자인, 사진·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BI(Brand Identit) / CI(Corporate Identity) / 회사 소개서 디자인 자사 홍보/마케팅을 위한 검색엔진최적화(SEO)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온라인 배너 광고 또는 블로그 마케팅 등 디지털 기반 마케팅 혁신 등
기본형	시스템 및 디지털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 사이트, 모바일 앱 개발 및 고도화 등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요소 기반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플랫폼 구축 등) 수립 그 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디지털 전환 항목(운영기관 사전 협의 必)
		<p>[활용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웹 사이트 또는 앱 기반 홈페이지 제작 및 고도화 모바일 앱 개발 및 기능 고도화(예약/결제 등) AR/VR 등 실감형 상품(비대면 랜선 여행 상품), 구독형 여행 서비스 개발 크롤링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또는 클라우드 서버 개발, 이전, 고도화 챗봇 기반 실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IoT, Beacon,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심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경영관리, 고객관리, 경험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기반 환경 구축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등 그 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디지털 전환 항목(운영기관 사전 협의 必)
		<p>[활용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관리(CRM) 및 고객경험관리(CE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내/외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경영정보관리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협업/화상회의/계약관리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경영, 실적 등의 업무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

○ **기타 지원사항** ※ 센터 연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1회 이상 참석 필수**

지원사항	지원내용
(1)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 기초교육 또는 선정과제 교육 지원
(2) 기업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 전환 개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3) 기업 네트워킹	상·하반기 네트워킹 행사(한마음 플러스+) 참여 지원

○ 지원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사업화지원금은 **협약 기간 내에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VAT)는 선정기업이 부담함**
2. 사업화지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집행, 후정산)하며** 증빙자료 검토 후 최종 지급
3. 사업화지원금의 규모는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사업화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기업별 사전협의를 통해 최종 협약 체결하며,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예산 집행 가능
5.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 수행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사업화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해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 회계검토가 이뤄질 수 있음
7. 사업화지원금 사용 시, 객관적인 지표 또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추후 지원금 사용 관련 증빙 가능한 서류, 지표, 결과물 제출 필수
8. 사업화지원금 사용 시, **단순 자산취득성 물품 구매비용은 지원 불가**하나 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 후 구매 가능
9. 센터 연계 지원 프로그램(기타 지원사항)은 지원사항 별 **각 1회 이상 참석 필수**

○ 사업화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

1. **인쇄제작물** : 브로슈어, 서류봉투, 명함 등 인쇄 제작물 사용 불가
2. **구조시설물** : 안내표지판, 게시판, 우체통 등의 구조물 불가
3. **사무기기** : 사무용품, 사무기기, 복합기, 기타 전산장비 구매 불가
4. **단순 프로그램** : 윈도우 11, 어도비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 불가
5. **단순 광고 및 홍보** : 키워드 광고, 온라인 배너광고 등 단발성 디지털 광고의 경우 기본형 심화형 선정기업은 사용 불가 (단, 입문형에 한하여 사전 협의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지원 허용함)
6. **구독형 서비스** : 월별 구독료, 플랫폼 수수료 등 구매 및 사용 불가
7. **인건비** : 사업화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사용 불가 (단, 심화형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 인력의 신규 고용일 경우 사전 협의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인건비 지원 허용함)

○ 심사일정

구 분	① 입문형	② 기본형	③ 심화형	비 고
① 서류검토 ~ 4. 4. (금)	지원 자격 충족, 서류 누락/미비 검토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② 서류심사 4. 8. (화)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6개사 (예비 2개사 포함)	10개사 (예비 2개사 포함)	6개사 (최종 선정 3배수)	
③ 발표심사 4. 16. (수)	1차 서류심사 근거로 제작한 PPT 발표를 통한 대면심사			대상기업 개별통보*
	미 실시	미 실시	발표시간 25분 (질의응답 포함)	
④ 최종선정 4월 內	타 지자체 중복수혜 여부 검토에 따른 최종선정			결과공지**
	4개사	8개사	2개사	

* 발표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발표자료 제출안내 및 발표시간 등)은 개별통보 예정

** 결과발표는 인천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 선정 관련 유의사항

1. 2차 발표 시 대표자 발표가 원칙이나, 사전 위임장 제출 없이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대리발표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必)
2. 본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천관광공사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3. 심사에 사용된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제출서류 미준수 및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항목 및 배점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서류심사 항목) 사업의 필요성(25), 적합성(25), 구체성(25), 기대효과(25)+가산점(2점)
- (발표심사 항목) 사업의 혁신성(25), 지속성(25성), 활성화 방안(25), 기대효과(25)

심사전형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입문형	기본형	심화형
서류심사	사업의 필요성	· 문제점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 · 기업의 문제 인식 및 디지털 전환 의지	25	25	25
	사업의 적합성	· 사업 취지와 목적 적합성 및 사업 이해도 등 · 수행의지 및 역량, 신청조건 부합 여부	25	25	25
	사업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일정 및 예산 사용 계획의 구체성 · 시장성 및 실현 가능성	25	25	25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및 인천관광 발전 기여도 · 매출, 관광객 유치 등	25	25	25
(서류심사) 합 계			100	100	100
발표심사	사업의 혁신성	· 실행 전략 및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등			25
	사업의 지속성	· 예산 지원 이후 지속가능성 · 장기 유지 및 추가 투자			25
	활성화 방안	· 사업 활성화 방안 및 프로젝트 활용 계획 평가			25
	기대효과	· 성과창출 및 정량적 / 정성적 기대효과 · 매출, 관광객 유치 등			25
(발표심사) 합 계			생략	생략	100

- 제출마감 : 3. 25.(화) 14시까지 제출 ※ 마감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tourbiz.contact@gmail.co.kr)
-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PDF 파일 형태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必 (분할접수 불가)
- 문 의 처 : 2025 인천관광 디딤돌 프로젝트 운영 사무국 (070-8015-6350)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032-834-9130)
- 공모안내 및 제출양식 다운로드 : <http://tourbizcontact.co.kr/>
- 제출서류

구 분	서류내용	서식
작성서류 (계획서)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1]
	2. 자가진단표	[서식 2]
	3. 공모신청서	[서식 3]
	4. 사업계획서	[서식 4]
	5. 자부담금 출자 협약서	[서식 5]
	6. 수행기관 소개서	[서식 6]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7]
	8.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8]
첨부서류	9. 사업자등록증	
	10.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1.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12.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시
	13. 기타 증빙서류(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필요시
발표자료*	13. 발표자료	대상 기업 개별통보 예정
	14. 대리인 서약서	

* 발표자료 : (심화) 디지털 전환 공모 지원 기업 중 1차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개별 요청 예정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므로 선정된 기관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또한 상기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및 선정기업에 있음
2. 요구양식 미준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기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기한 이후접수 서류, 요구서류 외 기타서류 모두 미인정)
3.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사항, 모방 및 표절 등 등 결격 사항 발견되는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가 가능함
4. 제출서류의 모든 항목은 채점 기준이 되며 일부 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운영기관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애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6.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7. 제출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시,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1.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또는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전 단계 지원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예외)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예외)
3.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2025년도 기준, 지원 업체 명의로 지자체 또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유사한 유형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단, 2025년 이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의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목적인 경우는 인정되나, 심사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공모추진에 반드시 부합해야 함)
 - ①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 (스타트업 입주기업, 협업 프로젝트 등)에 선정된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 ②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사업 등에 선정된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 ③ 기타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5. 신청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
6. 2024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미완료한 기업
 - ① 사업 추진 부진기업(과제 추진율 미달, 사업비 잔여금 미집행 등), 과년도 중도포기 기업
7.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
8. 기타 주관기관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기타 유의사항

1. 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사업실행계획, 협약금액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업협약 체결 이후 중도포기할 경우 사업비 반환 및 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 응모 및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공모사업 담당자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지원자(기업)는 반드시 본 공모 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모해야 함
 ※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요망 (<https://tourbiz.ito.or.kr/>)

○ 청렴이행 준수

-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을 위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모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천관광공사(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계 직원들은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공모·선정, 협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2-899-7305 (안전감사팀)
 - 홈페이지 : <http://www.ito.or.kr>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1. 디지털 전환 사업화지원금 사용 가능 범위

분야	개념	사업예시
1. 데이터 활용	고객관리 및 경험관리,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전환 분야	· 고객관리(CRM), 고객경험관리(CEM), 전자처리시스템(ERP), 데이터분석 기술개발, 내/외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
2. 상품 혁신	디지털 기술 요소 기반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AR/VR 등 실감형 상품개발, 비대면 랜선 여행 상품 개발, 구독형 여행 서비스 개발, D/B,회사소개서, 검색 엔진 최적화(SEO), 앱개발, 핀테크, 디지털 고객응대 등
3. 채널/마케팅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판매/유통 관련 채널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제작/고도화(UI/UX개선), 모바일 앱 개발 및 고도화 등 · 온라인 마케팅 및 디지털 기반 마케팅 전환
4. 기술/인프라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 분야	· IoT/Beacon을 활용한 상품 개발, 챗봇, 크롤링 시스템 개발 · 클라우드 서버 고도화, 키오스크 및 무인 결제기기 등
5. 경영 혁신	사내 경영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 경영정보관리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경영/실적 자동화 관리 등
6. 기타	기타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	·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디지털 전환 항목(사전 협의 必)

※ 디지털 전환 지원금은 객관적인 지표 또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 사용 되어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지표·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불가(불인정) 항목

1. 인쇄제작물 : 브로슈어, 서류봉투, 명함 등 인쇄 제작물 사용 불가
2. 구조시설물 : 안내표지판, 게시판, 우체통 등의 구조물 불가
3. 사무기기 : 사무용품, 사무기기, 복합기, 기타 전산장비 구매 불가
4. 단순 프로그램 : 윈도우 11, 어도비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 불가
5. 단순 광고 및 홍보 : 키워드 광고, 온라인 배너광고 등 단발성 디지털 광고의 경우 기본형, 심화형 선정기업은 사용 불가 (단, 입문형에 한하여 사전 협의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지원 허용함)
6. 구독형 서비스 : 월별 구독료, 플랫폼 수수료 등 구매 및 사용 불가
7. 인건비 : 사업화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사용 불가
(단, 심화형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 인력의 신규 고용일 경우 사전 협의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지원 허용함)

※ 디지털 전환 사업화지원금 사용 지침

※ 관광 디지털 전환(DX): 기존 비즈니스와 경영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과 서비스혁신,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및 개발·보완하는 것

비 목		기 준
(i) 재료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재화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제품,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제품(Io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제한 가능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시제품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구, 비품 등은 유형자산취득비로 구매 ※ 대여형태로 구입하는 경우 운영기관 사전승인을 통해 (렌탈, 리스 등), 협약기간 내에 집행 가능 ※ 단순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또는 단순소모성 부품(USB증폭기 등) 등 구매 불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ii) 외주용역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 必)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집행 - 외부 전문 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아이টে과 유사한 아이টে의 제작경험 보유 必 (운영기관 사전검토를 통한 승인 必)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한 경우 운영기관 사전검토를 통한 승인 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등)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외주용역 2,000만원 이상(공급가액) 또는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외부 전문업체(업력 1년 미만)에 과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아이টে과의 연관성 과업수행 가능성 보유역량 용역비용, 과업 수행기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함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간 거래, 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 ※ 프리랜서 중계서비스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외주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함)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포함), 결과보고서,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비 목		기 준
(iii) 인건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신규 고용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4대보험 가입 必) 인건비는 협약기간 중 4대 보험 가입한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한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광디지털전환 정의의 근거하여 반드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는 전체 사업화 지원금의 30% 이하로만 집행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집행 가능 해당 비목은 심화형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입문형·기본형 지원 불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건비 지급 불가 ※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불가 ※ 운영기관이 고용된 인력의 업무가 사업계획 및 관광 디지털 전환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화 지원금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 매월 급여대장, 매월 입금확인증(송금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고용인의 업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정부 또는 민간기관), 경력증명서, 직무기술서, 관련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등 운영 기관이 인정하는 서류
(iv) 지급수수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관광디지털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운영기관 사전 승인 必) ① 등록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 및 기술 등록비 ② 가입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기술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가입비 (일회성) ③ 임대비 : 외부 시스템 또는 기술을 임대할 때, 계약 기간 동안 지불되는 임대료 ④ 기술보호비 : 기술 임차(갱신) 등에 지급되는 수수료 ⑤ 저작권료 : 기술 또는 시스템 사용에 의해 지불되는 저작권 수수료 ⑥ 기타 수수료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급되는 수수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가입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비용은 협약기간 내에 계약한 경우에만 집행가능하며, 협약기간 이후 부과되는 비용에는 집행 불가 (도메인 등록비,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등) ※ 모든 지급수수료는 협약기간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협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 불가 예시) 협약기간이 '25.05.01~'25.10.31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25.11.01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집행 불가 (협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 사전 결제 불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임대(등록/가입 등) 계약서, 견적서 등

2.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가.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최종 자부담(부가세 포함) 지출 확인 후, 사후정산 함.
- 나. 지출증빙으로 적격증빙(법인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을 필수 제출해야하며, 적격증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함.
단, 모든 영수증은 5만원 이상의 카드 영수증만 인정하며, 현금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인카드 영수증 사용 불인정 함 (사전문의 요망)
- 다. 모든 집행비용은 적격증빙, 이체확인증, 성과품(결과보고 등)을 제출해야 함
- 라. 불입 지출 증빙양식을 준수하여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제출해야 함
- 마.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은 전담담당자가 진행해야 함

3. 지원금 정산

- 가. 지원금의 정산은 승인받은 사업종료 후, **10월 31일(협약기간)까지 中 1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 (증빙 일자 기준 10월 2일(목)까지의 증빙만 인정)**
- 나. 공사는 기업의 정산서 및 성과물에 대하여 검토 후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적정금액으로 감액 조정하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허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사는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 라. 자부담 집행내역을 포함한 총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완료되면, 공사 지원금 정산이 가능함

- 4. 성과제출 : 참여기업은 프로젝트 기간 내 추진성과를 공사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공통(필수) 제출서류	· 사업결과보고서 1부, 집행증빙자료 1부, 사업화지원금청구서 1부, 사업 결과물 1식 (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 등)
지원항목별 제출서류	· 디지털 전환 사업화지원금 사용 지침 내 증빙서류 참고
참고사항	· 견적서 제출 시, 공급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교견적서 필수 제출 · 카드영수증 제출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카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카드사용 ·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함 · 운영기관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